

대학의 로스쿨 준비와 추진현황

● ● ● 박 용 현 |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로스쿨 법안 통과 후 국내의 많은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로스쿨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들 간의 공통된 의견과 함께 대비되는 의견은 무엇인지,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정도 및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대학별 특성화전략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 대학들이 로스쿨을 어떻게 준비해왔고, 추진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 들어가는 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로스쿨을 준비해온 수많은 대학들이 그동안 국회의 지지부진한 동 법률안 처리 태도 때문에 애를 태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도 잠시일 뿐, 지금 전국의 40개 대학은 “로스쿨 설치 여부에 따라 대학순위가 뒤바뀐다. 학교의 명운을 걸겠다.”며 총칼 없는 로스쿨 유치전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상당수의 대학이 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현 상황에서 후폭풍이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그동안 로스쿨을 어떻게 준비해왔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II.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들의 양면성

1. 총입학정원 3,000명 이상에의 합창

법학계는 로스쿨제도 도입논의 이후 현재까지 로스쿨관련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로스쿨 총입학정원은 3,0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합창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국민 수가 약 5,76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변호사 1인당 사건수임비율도 선진국의 9배에 달한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선진국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3,000명 이상의 법률가가 20년 이상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 특히, 법학계를 대표하는

1) <http://www.unn.net>(2007. 8. 17).

두 단체인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도 지난 7월 11일 공동성명을 통하여 “로스쿨 개원 단계에서의 총정원은 최소한 법조인 배출 3,000명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²⁾ 로스쿨 총입학정원이 3,500명 내지 4,000명 선이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2. 로스쿨 동상이몽(同床異夢)

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대립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 10. 5. 로스쿨제 도입방안을 확정 한 이후 흘러나오기 시작한 ‘로스쿨 총 입학정원 1,200명’이라는 유령 같은 숫자가 지방대학들에게는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로스쿨 지역안배 인가”를 외치게 하였다. 지역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2005.3.17., 2007. 8. 24.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로스쿨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³⁾ 조선대·원광대·영남대·동아대 등 영호남 4개 사립대학의 법과대학 학장들은 지난 8월 16일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수와 법학교육 인프라만을 기준으로 로스쿨 설립대학을 선정하고 정원을 배분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들 사이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소재 대학에 각각 5대 5비율로 로스쿨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⁴⁾ 반면에 수도권대학들은 “지역안배를 위한다는 구실로 자칫 능력을 갖춘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에 실패할 수 있다. 지역안배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⁵⁾

나. ‘개별로스쿨 입학정원 150명 이하 기준’ 철폐론과 유지론의 대립

로스쿨 시행령안은 “개별로스쿨의 입학정원은 각 로스쿨의 교원·시설·재정 등 교육여건과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특정 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학정원을 150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이를 두고 수도권의 최상위 주요 대학들은 “입학정원 150명만으로는 로스쿨제도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전문강좌 개설은 커녕 기본적인 집단교육조차 하기 힘들 것이다. 학교별 정원은 학교의 역량이나 준비상황 등에 맞춰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로스쿨 개별정원 150명 이하 제한규정 철폐 주장은 “총입학정원이 묶인 상황에서 학생을 독점하겠다는 지나친 이기주의의 발로이다. 로스쿨이 가져올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한 비합리적인 사고다.”라고 역공하고 있는 형국이다.⁶⁾

다. 지방국립대 설치론과 지방사립대 설치론의 대립

지방대학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논리로 ‘지역안배 로스쿨 인가’를 줄기차게 주장하면서도 각론에 가서는 상반된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즉, 지방국립대학들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

2)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장 협의회 성명(2007. 7. 11).

3) <http://www.lawtimes.co.kr>(2005. 3. 18 ; 2007. 8. 24).

4) <http://www.unn.net>(2007. 8. 17).

5) <http://lawschool.lec.co.kr>(2007. 8. 17).

6) <http://www.lawtimes.co.kr>(2007. 8. 6).

이 저렴한 비용으로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반면에 사립대학들은 “만약 국립대학에 로스쿨이 설치된다면 시설 및 운영비용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고, 그 재정부담은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귀속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국립대학에는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과 같이 장기적이고 초기자본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를 육성하고, 지방사립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국립대학과 지방사립대학 간의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⁸⁾

III. 인적·물적 로스쿨 인프라 구축⁹⁾

전국적으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은 40개 교이며, 이하의 인적·물적 로스쿨 인프라 구축 통계는 자료가 확보된 33개 대학의 것이다.

1. 로스쿨 관련 건물 신·증축/ 기자재 도입현황

〈표 1〉 신축/증축/개보수 소요비용 현황

(단위: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국립대(10개교)	188,000	8,629,147	18,864,466	27,681,613
사립대(23개교)	58,933,033	46,267,012	61,388,870	166,588,915
총합(33개교)	59,121,033	54,896,159	80,253,336	194,270,528

〈표 2〉 기자재 비용현황

(단위: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국립대(10개교)	신규구입	5,225	847,445	685,379	1,538,049
	개선보수	0	0	92,000	92,000
사립대(23개교)	신규구입	633,969	1,420,326	3,627,092	5,681,387
	개선보수	65,680	17,140	377,240	460,060
총합(33개교)	신규구입	639,194	2,267,771	4,312,471	7,219,436
	개선보수	65,680	17,140	469,240	552,060

〈표 3〉 총투자비용

(단위: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국립대(10개교)	193,225	9,476,592	19,641,845	29,311,662
사립대(23개교)	59,632,682	47,704,478	65,393,202	172,730,362
총합(33개교)	59,825,907	57,181,070	85,035,047	202,042,024

7) <http://www.ihopenews.com>(2006. 3.23).

8) 김병록, “로스쿨 반드시 지방사립대학에 설립돼야 한다.” 영호남 4개 사립 법과대학 워크숍 자료집, (2004). 11면.

9) 유기홍 의원, 2006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2. 로스쿨 관련 교수 총원 및 예정현황

〈표 4〉 교수 총원 및 예정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9월이후총원예정
국립대(12개교)	정원	246	256	299	34
	현원	201	226	286	
사립대(28개교)	정원	668	694	734	131
	현원	404	450	584	
총합(40개교)	정원	914	950	1,033	165
	현원	605	676	870	

3. 2007년 이후 로스쿨 관련 투자예정액

〈표 5〉 2007년 이후 투자예정액

(단위 : 천원, %)

	2006년 로스쿨 예산액			투자 예정액	
	법(학)과 대학 총예산(A)	로스쿨 관련 예산(B)	로스쿨예산비율 (B/A*100)	07년 투자 예정액 예정액	07년 이후 투자 예정액
국립(12개교)	7,454,091	5,236,588	70.3	21,747,000	16,252,814
사립(28개교)	90,501,684	85,543,618	94.5	51,218,184	35,070,000
총 (40개교)	97,955,775	90,780,206	92.7	72,965,184	51,322,814

IV.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로스쿨제도의 핵심은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대학의 법학교육과 법률가의 자격을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의 대전제인 충실한 교육을 이루어 내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야말로 로스쿨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¹⁰⁾

1. 교육과정

로스쿨의 교육과정은 각 로스쿨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대학들은

〈표 6〉 수료필요학점 / 이수가능학점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수료필요학점	35	10	51	96
이수가능학점	35	10	63	108

10) (사)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연구」(학술진흥재단, 2007), p.2.

〈표 7〉 필수 및 선택필수과목 구성표

구분	과목군	세부과목
필수	기본법학과목(30)	공법(8), 민사법(16), 형사법(6)
	실무기초과목(5)	법조윤리(2),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 작성(2), 모의재판(1)
선택필수	실무기초과목(4)	로어링(분야별), 클리닉(분야별), 엑스틴십(분야별) 등 (각 2)
	기초법학과목(4)	법철학, 법사회학, 법사학 등 / 북한법, 미국법, 유럽공동체법, 영국법, 프랑스법, 독일법, 일본법, 중국법, 이슬람법 등 (각 2)
	인접과목(2)	법과 관련된 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의 과목 (각 2)

※ 선택필수과목은 이수강제단위를 초과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간주됨.

〈표 8〉 학기별 필수과목 구성표

학기	과목
1-2학기	공법(8), 민사법(16), 형사법(6),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2), 법조윤리(2)
3-6학기	모의재판(1), 선택필수, 졸업논문(P/NP)

이미 로스쿨의 특성화와 관련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두고 있으나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부득이 한국법학교수회가 개발한 로스쿨 교육과정모델¹¹⁾을 소개한다.

2. 교육방법¹²⁾

한국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의 교육방법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 즉 미국 로스쿨에서 발전된 사례 중심형, 문제해결형 교육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 중심형 교수법(case method)이라 함은 판례를 소재로 사건의 개요, 법률적 쟁점, 쟁점에 대한 판결의 태도를 이해한 다음 그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판례도 익히고 법적 개념, 관련 법원리, 법적 논증과정을 학습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문제해결형 교수법(problem method)이란 실제 사례가 아닌 가상의 사례나 입법 자체를 소재로 한 교육방법이다. 판례의 태도를 이해하는 데는 실제의 판례가 필요하지만, 교육목적을 위한 사례는 가상의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판례가 없더라도 중요한 법적 논점을 제기하는 가상의 사례를 통해 법의 개념과 원리를 체득해 가는 교육방법은 영미법계 국가의 법학교육에서나 대륙법계 국가의 교육에서나 모두 그 유용성이 있다.

또한 한국법학교수회는 이와 같은 사례 중심형, 문제해결형 교육방법을 보조할 교육방법으로 임상교육방법(legal clinics), 활동학습 내지 역할학습(simulation/role play/adversary method), 공동강좌(team teaching) 등도 제시하고 있다.

11) (사)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연구」(학술진흥재단, 2007), pp. 18~19 참조.

12) 상계서, pp. 19~27 참조.

3. 특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인가기준 항목에 특성화 여부를 포함시킬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학들은 특성화가 로스쿨 인가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표 9〉 대학별 로스쿨 특성화분야

대학명	특성화분야	특성화배경
서울대	국제법/인권법	국립대로서 공공 및 공익성 고려
연세대	국제통상/의료생명과학관련 법	경영대와 의대가 설치된 대학의 장점
성균관대	기업법무	삼성그룹의 재단이라는 점
한양대	국제거래관련 법/금융조세법	
경희대	국제법무	
이화여대	여성문제관련법	여자대학
건국대	부동산관련 법	부동산학과의 지명도
부산대	금융·조세법/해운·통상법	항구 및 금융·무역도시 부산에 소재
조선대	지적재산권 등 문화예술관련 법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에 소재
인하대	지적재산권법/물류법	항구도시 인천에 소재

※ 한국경제신문(2007. 8. 14) 참조.

V. 결 어

로스쿨제의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100여 년 간 지속되어온 법조인양성·충원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로스쿨제도가 단순히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를 대체하는 데만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따라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각 대학들은 특수한 교육목적과 비전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완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원과 교육시설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과중한 학비의 경감·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하여도 고뇌하여야 할 것이다. 

박용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조선대 법과대학 학장, 전국 법과대학 학장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이사,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